

교양학부 운영 규정

제정 2013. 11. 15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경대학교의 교양학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교양학부는 기초교양교육의 내실을 통해 기초학습능력을 제고하고, 인성과 창의적인 사고력의 함양으로 대학 교육이념,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교육의 정책개발 및 기초연구
2. 교양교과 개발
3. 교양교과 운영 관리 및 지원
4.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운영
5. 기타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업무

제3조(학부장) ① 교양학부에는 학부장 1명을 두며, 학부장은 총장이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보한다.

② 학부장의 임기는 1년 이며, 교양학부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조직) ① 교양학부에는 교육연구개발부와 교육지원부를 두며, 각각의 주임교수를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교양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육연구개발부는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과목 개설 및 폐지, 담당강사 위촉,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.

③ 교육지원부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로 구성되며, 교양교과를 전담하여 대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을 전담한다.

④ 교양학부 소속 교원은 원소속 학부(과)와 겸무하되, 교양학부 전담 교원의 지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교양학부운영위원회) ① 교양학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(학부장 당연직)과 교육연구개발부 및 교육지원부 각각의 주임교수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 교과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
2. 교양 교과과정 개발 및 편성
3. 교양 교과과정의 운영 및 평가
4. 교양 학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
5. 기타 교양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위원회 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 개최 2일전에 회의안건, 장소가 기재된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보고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총장과 교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